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4
----------	-----

제출년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2023.3.28.)에 따른 반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제2조의 부과대상 삭제(안 제3조에 포함)

다. 지역보건법 제22조 3항 및 제34조 1항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추가(안 제3조에 따른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3.7.26. ~ 8.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2023.8.24.~25.)와 심의
- 원안의결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과태료 부과기준)”을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부과대상) <u>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u></p> <p>1. <u>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u></p> <p>2. <u>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u></p> <p>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u>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u></p>	<p>제1조(목적) ----- ----- <u>제3</u> <u>4조</u>----- ----- -----.</p> <p>제2조(부과대상) <u><삭 제></u></p> <p>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u>법 제34조</u>----- -----.</p>

[별 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기준일 : 처분일, 재적발일)
-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 라.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 개별기준

부 과 대 상	근 거 법 령	부과금액(단위: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법 제34조제2항 제1호	100	200	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

관계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제1항·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8. 4.>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8.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u>마. 법 제21조제1항·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u>	<u>법 제75조 제2항제4호</u>	<u>600</u>	<u>1,200</u>	<u>2,400</u>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연락처	(033) 330 - 4820